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 “기본모델”이라 함은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전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모델의 전기용품의 제품군중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 “파생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의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부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델로서 그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모양 등을 변경한 하나의 제품군을 말한다.

제 3 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제 4 조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관은 별표 3과 같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수행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안전인증의 신청]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통관하기 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대리인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 소재지 및 전화 번호
 4. 제품명 · 기본모델명 · 정격 · 파생모델명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 제조업체명 · 모델 · 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3. 절연재질(온도특성 및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4. 전기회로도면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7 조 [안전인증의 확인]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 소재지
 4.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 기본모델명 ·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5. 안전기준
 6.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7.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발급대장(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인증의 변경]

- 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변경하거나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모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

- ①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2.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②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출고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 검사·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면제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 또는 확인한 결과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서와 별표

7의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인증시의 조건]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 불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보고

제11조 [정기검사]

①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여부
4.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의 작성·보관여부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미리 통보한 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의 결과

제13조 [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대상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ISO 17025)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와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계획서 등]

- ① 영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제조연월일 및 제품모델
 2. 결합의 내용 및 원인
 3. 결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해 및 주의사항
 4. 결합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합의 시정방법은 결합의 수리, 동일 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시·도지사는 영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행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실태가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전기용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안전인증시험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당해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모델(이하 "형식승인모델"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모델의 현황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을 얻은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수입되는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명 및 제조국기를 말한다)
2. 수입판매업자의 성명(명칭)·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제품명·형식승인번호·동일 형식번호에 포함되는 전체 모델명
4. 제조실적(수입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수입실적)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에 대한 현황을 2000년 8월 20일까지 관세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103호

[별표1]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제2조 제3호 관련)

구 분	범 위
1.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가. 변압기(트랜스포머)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다. 광접합소자(포토커플러) 라.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한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주는 X·Y축전기(캐패시터)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된 부품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나. 온도과승방지장치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트랜스포머)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된 부품	가. 전동기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그넷 클러치
4. 전기적·열적·기계적·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질	가. 교류전압 30V이상, 직류전압 60V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나. 회로안에서 화재발생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고려된 외부의 재질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별표2]는 지난 7월호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 안전인증기관의 기정기준(제4조 관련)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 전기용품의 인증업무를 주된 업무로 할 것

나.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절차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이하 “ISO”라 한다)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 받을 것

다. 별표 2에 의한 제품분류중 2분의 1이상에 대하여 제품분류별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수행범위별로 국제규격에 의한 시험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라. ISO 9000 인증기관에 중하는 자체품질시스템을 갖추고, ISO 9000 또는 한국표준화법 제1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할 것

마.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공인을 받을 것

나.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별표4]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 관련)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위반시
1. 사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취 소			
2. 영업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3호	시험업무 또는 인증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시험업무 또는 인증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시험업무 및 인증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4조 제1항제4호	시험업무 또는 인증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시험업무 또는 인증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시험업무 및 인증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5호	시험업무 또는 인증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시험업무 또는 인증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시험업무 및 인증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방법·절차 등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6조	시험업무 또는 인증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시험업무 또는 인증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시험업무 및 인증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5] 안전인증 확인사항(제7조 제1항 관련)

1.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의 확인

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와 당해 제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산업자원부령 제103호

만, 이미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모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확인업무를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신청제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품에 대한 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라.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인증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다.

[별표6] 안전인증번호의 부여기준(제7조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A	D	0	1	0	0	1	-	0	0	0	1	A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안전인증기관구분코드

나.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코드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기타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북 한	Q		

비고

외국의 지역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휘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티, 라오스, 말레이지아, 몰디브,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태국,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등
2. 미주지역 :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치아, 우루과이, 미국, 베네수엘라 등
3. 유럽지역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유고슬라비아 등
4. 중동지역 :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
5. 아프리카지역 : 알제리, 앙골라,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콩고, 이디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등
6. 기타지역 : 팜, 홍콩, 마카오, 대만, 지브랄타 등

다. 제품분류 코드

별표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적용범위의 분류를 따른다.

제품분류	코드	제품분류	코드
전선 및 전원코드	01	가정용 또는 업소용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 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 캐패시터 또는 기타 교류용 전기기기	03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04	정보·사무기기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 변압기	06		

- 라. 동일지역 · 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 : 3자리
- 마. 연도별 끝자리 번호 : 1자리(예 : 2000년 → 0, 2001년 → 1, 2002년 → 2)
- 바. 동일공장 · 동일제품분류의 기본모델의 일련번호 : 3자리
- 사. 기본모델의 변경신청에 따른 안전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기본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의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최초수정부터 A → B → 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단,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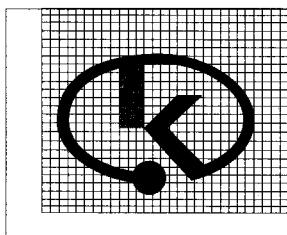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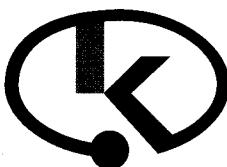
2. 안전인증번호 사용방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의 발급시에 기재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표시에 사용한다.

[별표 7]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면제표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가. 표시방법 및 도형



나. 참고 사항

- (1) 안전인증을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2) 안전인증의 표시는 당해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되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동 표시의 주위에 기타 안전인증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국 ·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4) 안전인증의 표시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 (5) 안전인증의 표시는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료나 표면이 거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6)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에 대한 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함께 그 하단에 “면 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한다.

[별표 8]

수수료(제15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안전인증	<p>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p> <p>가. 안전인증서발급 : 60,000원</p> <p>나. 시험료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대상 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다. 공장확인(공장확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개 공장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비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그 신청시에 안전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기관에 납부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서 발급시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내역을 문서로 발급한다.</p>
안전인증의 변경	<p>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p> <p>가.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p> <p>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p>
안전인증의 면제	<p>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p> <p>가. 당해 제품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p> <p>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p>
정기검사	<p>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p> <p>가. 공장 1개소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한다.</p> <p>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료를 적용한다.</p>
기타	<p>가. 공장확인 · 안전인증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이나 정기검사 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등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출장비를 계상한다.</p> <p>나. 국외의 공장확인 · 정기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인증기관이 별도로 산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p>